

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	처리기간 7일
관리자	성명(법인명)		생년월일(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)
	주소 (전화번호:)		
	전자우편 송달 동의	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. [] 동의함 [] 동의하지 않음	
	전자우편 주소 @		
신청내용	허가(신고) 번호		착공신고일
	변경 사유		
	변경사항		
	변경 전		변경 후

「건축물관리법」 제30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관리자)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	수수료 없음		
「건축물관리법」 근거규정				
「건축물관리법」 제30조의3제3항	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			
유의사항				
「건축물관리법」 제54조제3항제3호	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			
처리절차				
변경신고서 작성	→ 접수	→ 검토	→ 변경신고 확인증 작성	→ 변경신고 확인증 발급
신청인 (관리자)	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 건축물 해체허가(해체신고) 부서			